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745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정덕교

변론 종결 2020. 6. 16.

판결 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6,518,042원 및 그중 104,517,194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11. 26.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7. 접수 제4281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8. 11. 28. 접수 제2651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25. 'C'이라는 상호로 중고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던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E	232,000,000원	2021. 3. 25.	290,000,000원
---	--------------	--------------	--------------

2) 피고 A는 2016. 4. 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9.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8%)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9. 2. 2.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에 피고 A의 채권자인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에 합계 104,517,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대지급금 1,605,558원과 미수 위약금 395,290원의 채권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A는 2018. 11. 26.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8120호로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8. 11. 26. 피고 B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6518호로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106,518,042원(대위변제금 104,517,194원+대지급금 1,605,558원+위약금 395,2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04,517,1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고 A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피고 A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다(민법 제481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D의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13. 피고 A의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자신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D의 채권을 법정대위하여 취득하였고, D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6. 4. 1.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여한 합계 3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A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피고 B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 B가 2014년경부터 피고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 A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하고, 피고 A로부터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3억 4,000만 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빠른 기일 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지불변제각서를 작성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미

별지

1)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피고 B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피고 A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살펴보다도[피고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가 피고 A의 자금난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피고 B가 선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피고 B가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